

사이다페이/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계약일	2019 . . .
상	(주)쏘다
생	
관할지역	

사이다페이/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주)쏘다(이하 "상")와 (이하 "생")은/는 "상"이 개발 및 서비스하는 사이다페이, 콜라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포괄적 영업을 위한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상"이 공급하고 "생"이 영업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리점 의무사항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가맹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또한 "상"과 "생"이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범위]

1. 본 계약은 "상"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이 리셀러를 모집하거나 가맹점을 대상으로 리셀링하기 위함이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의 유·무형의 영업이미지, 상호,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용권으로, "생"의 사용기한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유효기간 이후는 사용 권리를 상실한다. 단, "생"은 검색사이트 내에서 서비스 상호와 연관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3. "생"은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관련 리셀러 및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본 계약의 범위에는 본 계약서 및 "상"과 "생"이 합의한 일체의 서류와, <https://my.ciderpay.com> 등을 통하여 "상"이 "생"에게 안내하는 일련의 모든 운영안 등이 포함된다.
5. "상"은 변경되는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을 "생"에게 충실히 알려야 되며, "생"은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고, "생"이 전체 또는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제3조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수익모델]

별첨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생"의 권리]

1. "생"의 영업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 "생"은 "상"과 계약된 기간 내 본점의 상호, 상표, 영업표지, 서비스표권의 사용권리를 가진다.
3. "상"은 "생" 및 예하 리셀러를 통해 모집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생"은 예하 리셀러에게 재정산을 할 권리를 갖는다.
4. "생"은 리셀러별 수수료 마진을 책정할 수 있다.
5. "생"은 리셀러별 가맹점 등록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5조 [“생”의 의무사항]

1. “생”은 본 계약서, 관계법령 및 “상”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은 서비스 가맹점의 유치영업과 서비스 신청, 서비스 사용법 교육업무를 책임진다. (예하 리셀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포함)
3. “생”은 서비스 가맹점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월사용요금 및 온라인결제 정산에 대한 안내를 책임진다.
4. “생”은 자신이 영업한 가맹점이 본 계약의 부속합의에서 정하는 가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가맹비를 직접 수금하여야 한다.
5. “생”은 현장 방문을 요하는 가맹점의 유지보수 요청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하여야 한다.
6. “생”은 예하 리셀러를 둘 경우 해당 리셀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으로부터 정산 받은 수수료 중 “생”의 마진을 제한 후 리셀러 마진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상”의 사업과 업무에 유·무형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내부정보절취, 서버내부침입, 불법정보 게시 및 유포, 허위사실유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관련 사실이 있을 경우 “생”은 법적인 책임의 부담을 지며, “상”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생”은 “상”에게 “생”의 정보사항(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연락처, 주소, 휴업 및 폐업 여부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생”에게 제공된 가맹점에게 “상”의 영업이미지로 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0. “생”은 본 계약기간 동안 타 대리점, 리셀러 및 가맹점에게 “상”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동일한 서비스 또는 “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1. “생”은 수수료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12. “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취재, 인터뷰, 사진 촬영 요청 등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상”과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 [“상”의 의무사항]

1. “상”은 관계 법령과 본 계약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은 “생”의 정보를 “생”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상”은 “생” 및 “생”의 리셀러가 영업한 가맹점이 타 대리점 및 타 대리점의 리셀러로 넘어가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다.
4. “상”은 “생” 및 “생”의 리셀러가 영업한 가맹점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상”은 “생”이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1. 본 계약은 상호 동의 하에 작성날인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의 정책에 준거하여 계약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협의 하에 계속 연장하기로 한다. 협의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중지]

1. “상”이 “생”에게 업무협력을 요청할 경우 “생”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상”이 3회에 걸쳐 협력 및 변경 또는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생”이 해당 요청에 대하여 통보 없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시까지 본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2. “상”은 “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 1) “생”에게 “상”이 계약의 중지 통보 후 3개월 이상 변경 또는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 2) “생”이 “상”에게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부할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계약의 해지]

1. “상”은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계약해지 2개월 전에 “생”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상”은 “생”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1) 관청 등으로부터 2회 이상 탈법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
 - 2) 2회 이상 “상”에게 시정요구를 통보 받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 3) “상”의 경쟁업체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할 경우
 - 4) “생”이 “생”의 리셀러 및 가맹점을 기망하는 행위가 접수되었을 경우
 - 5) “생”이 모집한 가맹점 중 불량매출로 인한 다발성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3. “생”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상”의 영업이미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철거 및 삭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후에도 “상”의 영업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본조 2항으로 “상”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은 “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상”이 손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 “생”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지급할 금액이 없을 경우 “생”은 일정금액을 “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상”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상”의 고유의 재산이며, 권한이다.

2. “생”은 본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상”의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생”은 본 계약이 종료/해제/해지된 후에는 가공된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1. “생”은 본 계약에 약정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생”은 제3자에게 계약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할 수 없으며, 담보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1. “상”은 “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한다.
2. “생”의 클레임 시 “상”은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

제14조 [분쟁의 사전처리]

1. “생”의 영업으로 인해 가입된 가맹점 매출이 불량매출인 경우 “상”은 “생”에게 기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추후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2. “생”은 “상”의 책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생”은 “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충하는 법령 또는 법규에 관계 없이 본 서비스 이용 또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관할법원]

“상”과 “생”간에 업무협력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상”의 소재지 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을 보증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과 “생”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수익모델 관련 부속 합의서
2. 하부업체 보증보험 대리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
3. “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씩(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이하 서명을 위한 여백)

2019년 월 일

“상”

상 호 : (주)쏘다

사업자번호 : 277-81-01253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01호

대 표 : 장 신 호 (인)

“쟁”

상 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장주소 :

대 표 :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수익모델 관련 부속 합의서

1. 사이다페이 대리점 가입조건

- “상”은 “생”에게 서비스 대리점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사이다페이 수수료 공급 및 수익조건 (부가세별도 기준)

- “상”은 사이다페이 공급수수료에 있어 “생”에게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1) 카드결제 2.5%, 2) 휴대폰결제 3.4%에 공급한다.
 * 결제수단별로 “생”에게 제공되는 공급수수료 원가 개념
 * 동 수수료 공급조건은 카드사, PG사, 본사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수료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지급
 * 사이다페이 가맹비가 있을 경우 상계 후 지급
- 상기 수수료 공급 조건 하에서 “생”에게 귀속되는 결제 수수료 마진 분배액은 다음과 같음

판매자 유형별 실질 공급수수료 개관

구분	공급수수료			대리점마진
	일반정산	익일정산(일반)	익일정산(배달)	
영세사업자 (3억미만)	1.2%	1.7%	1.4%	가맹점별 별도 설정
중소1사업자 (3억~5억미만)	1.7%	2.2%	1.9%	
중소2사업자 (5억~10억미만)	1.8%	2.3%	2.0%	
중소3사업자 (10억~30억미만)	2.0%	2.5%	2.2%	
일반사업자 (30억이상)	2.5%	3.0%	2.7%	
개인판매자	3.7%	4.3%	無	
담보	가맹점담보	대리점담보		

- * 카드결제 기준이며, 여신관련법에 따라 향후 결제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음
- * 입금일 D+3일, 영세/중소 환급 D+5일
- * 익일정산(배달)은 배달앱에 가입된 상점이 콜라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만 가입가능

3. 사이다페이 가맹비 적용조건 (부가세별도 기준)

- “생”의 리셀러 및 판매점 모집 과정에서 “생”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리셀러 가맹비, 판매점 가맹비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생”의 선택으로 리셀러 또는 판매점에 대해 가맹비를 수수하는 경우 “상”에게 건당 15,000원을 납부해야 함 (동 본사 가맹비 지급액은 “생”에 대한 수수료 수익 분배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음)

4. 콜라서비스 설치비 및 월 관리비 배분조건 (부가세별도 기준)

- 월 관리비 마진은 “상”은 “생”이 유치한 콜라서비스 가맹점 중 월관리비의 수납이 완료된 가맹점수*수금액의 60%를 “생”에게 지급한다.
- 수수료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지급
- 설치비 및 월 관리비는 “상”의 프로모션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콜라서비스 설치비 및 월 이용료

구분	설치비(최초1회 발생)	월관리비
기준가	30,000원	50,000원/월
대리점 수수료	전체	수금완료된 관리비의 60%

* 프로모션 진행 기간 가입한 가맹점은 탈퇴시점까지 최초 가입한 요금제로 수납함

하부업체 보증보험 대리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

(주)쏘다(이하 “상”이라 한다)와 (이하 “생”이라 한다)은/는 [사이다페이 서비스 통합이용계약서](이하 “사이다페이 이용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 “생”의 리셀러 및 판매점(이하 “하부업체”라 한다)에 대한 보증보험 적용의 면제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본 부속 합의는 “생”의 요청에 의해 “상”이 “생”의 “하부업체”의 보증보험을 면제함으로써 발행되는 사안에 대해 “상”과 “생”의 권리, 의무 및 책임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은 “하부업체”의 보증보험 면제를 위해 “생”의 보증보험을 증액하는데 합의한다. 증액될 보증보험 가입액은 “생”의 “하부업체” 중 매출상위 5개 업체의 최근월의 월매출 합으로 하여 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 보증보험 가입액 : [20,000,000] 원
3. 2항과 같이 “생”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생”의 “하부업체” 각각의 손책을 “생”이 대리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생”의 “하부업체”에서 “상”에 대한 손책이 발생한 경우 “상”은 “생”의 보증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생”의 “하부업체”에서 보증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책이 발생한 경우 “생”은 보증보험 책임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상”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은 본 항의 초과분을 근거로 하여 “생”에게 보증보험의 증액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상”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6. 5항의 합의사항은 “사이다페이 이용계약” 제8조 [“을”의 의무사항]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증보험 책임이 “생”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은 “생”과 “생”의 “하부업체”에 대해 다른 회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2019년 [●●]월 [●●]일

“상” 상호 : (주)쏘다 사업자번호 : 277-81-01253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01호 대표 : 장 신 호 (인)	“생” 상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장주소 : 대표 :
--	--